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37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김상욱·김선교·조지연

박준태 • 박덕흠 • 김기현

최형두 • 김예지 • 이종배

서천호 · 성일종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,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, 국회사무처의 「법률안의 표준화 기준」에서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

려는 것임(안 제20조).

법률 제 호
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 중 "500만원"을 "2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벌칙) 제11조를 위반하여	제20조(벌칙)
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	
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<u>500</u>	2 <u>천</u>
<u>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<u>만원</u>